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 발의연월일: 2020. 6. 3.

발 의 자 : 어기구 · 송영길 · 김회재

박 정・홍성국・강준현

오영화 · 김남국 · 박영순

양향자 · 장경태 · 서동용

황운하 • 이수진 • 전용기

김철민 • 이규민 • 김경만

유정주(19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일이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하고 있음. 그런데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수탁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.

또한 현행법에서는 수탁·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, 개선요구에 납품대급의 지급 등 시정명령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

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시정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,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지급,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위탁기업이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통해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(안 제25조제3항 신설).
- 나.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에도 부당 감액한 납품대금 이자 미지급 위반사실을 추가함(안 제26조제1항)
- 다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,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도록 함(안 제27조).
- 라.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기업의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(안 제41조제3항제1호

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3항 중 "60일"을 "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"로 한다.

제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탁기업이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통해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"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"을 "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"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"제23조의 규정 또는 제25조제1항"을 "제23조,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"으로, "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"를 "조사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

중 "제1항을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"을 "제4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25조제1항"을 "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"으로 한다.
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, 제22조, 제22조의2, 제23조,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, 법 위반행위의 중지, 향후 재발방지,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.

제28조의2제1항 전단 중 "제27조제5항에"를 "제27조제7항에"로, "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"를 "제2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"으로 한다.

제41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27조제3항(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(같은 조 제4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납품대금의 지급 등) ①・	제22조(납품대금의 지급 등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<u>60</u>	③
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	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
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	
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	
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.	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25조(준수사항) ①・② (생	제25조(준수사항) ①・② (현행과
략)	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위탁기업이 제1항제1호의
	행위를 통해 감액한 납품대금
	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
	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
	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
	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
	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.
③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26조(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	제26조(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
조치요구 등) ① 중소벤처기업	조치요구 등) ①
부장관은 위탁기업이 제21조,	

제22조, 제22조의2, 제23조, 제2 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4조부터 제12 조까지의 규정, 제12조의2, 제1 2조의3, 제13조, 제13조의2, 제1 5조, 제16조, 제16조의2, 제17조 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|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| 제25조 또는 「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」 제24조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27조(수탁·위탁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) ①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·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, 제22조, 제 22조의2, <u>제23조의 규정 또는</u> <u>제25조제1항</u>을 이행하고 있는

<u>제25조제1항</u>
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
② (현행과 같음)
ll27조(수탁·위탁기업 간 불공정
거래행위 개선) ①
<u>제23조, 제25조제1항부터</u>
제3항까지의 규정

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 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 탁한 경우에도 <u>제1항을</u> 준용한 다.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

여야 한다.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
조, 제22조, 제22조의2, 제23조,
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
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
하여 납품대금의 지급, 법 위반
행위의 중지, 향후 재발방지,
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
명할 수 있다.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
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위탁기
업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
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
하여야 한다.
<u>4</u>
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
<u>후</u>
<u> </u>

항과 <u>제2항</u>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·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 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 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 1조, 제22조, 제22조의2,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 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,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| 제3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 관서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

<u>제4항</u>
.
<u>⑥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<u>⑦</u>
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
의 규정

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.

제28조의2(교육명령 등) ①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5항 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 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 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제 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 선요구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 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 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위탁기업 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41조(벌칙) ①・② (생 략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(생략)

<신 설>

_	
제2	· 8조의2(교육명령 등) ①
_	<u>제</u> 27조제7
ਨ <u>ੋ</u>	<u>당에</u>
_	
_	<u>제27조제2항 및 제4</u>
<u>ŏ</u>	<u>당에 따른 시정명령</u>
_	
_	
_	·
_	
	② (현행과 같음)
·	1조(벌칙) ①·② (현행과 같
	2) 3)
_	
_	
_	
	. (현행과 같음)
<u>1</u>	의2. 제27조제3항(같은 조 제4
	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
	한다)에 따른 공표 후 1개월
	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

	항(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
	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
	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